

『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,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간 5년 연장(안 제3조제6항)
 - [현행] 2021.12.31. → [개정] 2026.12.31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